대외민사분쟁에서 민사재판권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박 철 남

법인들사이의 민사거래는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민사거래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외민사관계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민사분쟁문제들을 신속정확히 해결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대외민사분쟁에 대한 재판기관들의 민사재판권행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리해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김일성전집》제92권 199~200폐지)

일반적으로 민사재판권에는 재판소가 제기된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을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과 재판심리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도록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수 있는 권한, 판결에서 의무진자가 제정된 기간안에 지적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판결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이밖에도 민사재판권에는 증인, 감정인의 호출 및 증거제출의 요구와 그에 응하지 않는자에 대한 제재의 적용 등을 할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외민사분쟁에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두 측면에서 구분해볼수 있다.

대외민사분쟁에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어떠한 범위안의 사람에 대하여 민사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재판권은 국가주권, 국가권력의 한 형태로서 그 범위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 즉 공화국의 민사재판권은 공화국령역안에 있 는 공화국공민과 공화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그러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들과 관련되는 대외민사분쟁에 한해서는 공화국의 민사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와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화국의 민사재판권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들가운데서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판들과 국제기구의 대표자와 그 사무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게 미친다. 우리 나 라에 주재하는 외교판들과 국제기구의 대표자와 그 사무직원에 한에서는 국제관례상 공화 국의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국제관례상 해당 나라의 민사재판권의 관할을 받지 않는것을 재판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들에게 재판면제권이 인정되고있지만 이러한 재판면제권은 절대적이지 못하고 불완전하며 제한적이다.

민사재판면제권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측면은 첫째로, 재판면제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사적용무로 하여 우리 나라 법인이나 공민과 민사분쟁을 발생시켰을 때 공화국재판소의 관할을 받는데서 표현된다.

《윈외교관계조약》(1961년)과《윈령사관계조약》(1963년)에서는 외교관의 사적용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있다.

《1. 외교대표가 주재국에서 자기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이다.

- 2. 외교대표가 사적신분을 가지고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혹은 계승인으로 된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이다.
 - 3. 외교대표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경제활동에 종사한것으로 하여 발생한 소송이다.
 - 4. 파견국대표신분으로 명시되지 않고 맺어진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다.
- 5. 령사관성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 그들의 차량, 선박, 항 공기 등 교통수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인한 손해보상소송이다.》

외교관은 자기의 사적사무로 인한 우와 같은 경우의 소송에 대하여 주재국의 민사재 판권에 따라야 한다.

민사재판면제권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측면은 둘째로, 외교관본인이 공화국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는데서 표현된다.

면제권을 가지는 사람이 스스로 공화국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재판권의 면제를 포기한것으로 인정되며 공화국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이 경우 면제권의 포기의 효과는 그 사건 및 그에 뒤따르는 소송에만 미친다.

민사재판권은 우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관례상 자기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 부 성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민사재판권은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의 대사와 대사판성원 및 그들의 가족 등 국제법상치외법권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외교관례상 해당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외교특권이 호상 인정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당사자로서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받지 않으며 또 증인이나 감정인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민사재판권은 우리 나라 령사대표부의 령사와 사무직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비록 령사대표부가 대사관보다 급이 낮은 외교대표부이지만 외교관례상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기관의 하나로서 령사대표부성원들에 한에서도 외교특권이 인정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령사대표부의 령사와 사무직원이 자기의 사적사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민사재판권은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및 그 대표자와 사무직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및 그 대표자와 사무직원도 주재국의 외교 관들과 꼭같은 외교특권이 인정되고있기때문이다.

대외민사분쟁에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으로 어떠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여 민사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들은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민사재판관할에 의하여 그 관할이 명백해진다. 그러나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의 재판소가 재판권을 행사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민사사건가운데서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재판소가 민사재 판권을 가지는가 또는 다른 나라의 재판소가 민사재판권을 가지는가 하는것이 바로 국제 민사재판관합권의 문제이다.

여기서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사건이라는것은 외국법인, 외국조직,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 소송당사자들이 다투는 목적물이 외국에 있는 사건, 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사건 등 해당 사건이 인적, 물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의미하다.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립장에는 어떤 립장들이 있으며 어떤 원칙에서 공화국의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가에 대하 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리해관계로부터 국제민사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립장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립장상차이로 하여 국제민사재판관할 권을 인정하는 기준도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국제민사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어떤 립장에서 결정할것인가 하는 견해에는 여러가지 가 존재한다.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의 문제는 원래 나라들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국제민사소송법이 있다면 이에 의하여 규제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사회에는 국가들사이에 일반적으로 국제민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합의된 법이 없다. 다만 유럽동맹에 이와 관련한몇개의 조약이 있을뿐이다. 실례로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EC협약》(1968년,일명 브류쎌협약)과 《루가노협약》(1988년)등을 들수 있다.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스스로 자기 나라 의 재판권의 한계를 결정하고있다.

국제적으로 매개 나라가 국제민사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어떤 립장에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겠는가 하는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로, 자기 나라의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할 때에는 오직 자기 나라와 자기 국 민의 리익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국가주의의 립장이라고 한다.

실례로 당사자가 프랑스인이면 항상 프랑스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프랑스민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들수 있다.

둘째로,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국가주권의 저촉문제로 보고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이것을 국제주의의 립장이라고 한다.

실례로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서는 그 소재지국 재판소의 전속관할을 인정하며 리혼사건과 같은 신분관계의 소송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대인주권에 따라 당사자의 본국의 관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것을 들수 있다.

셋째로, 매개 나라의 재판기관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정하여야 하며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의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재판기능을 각국의 재판기관사이에 분배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보편주의의 립장으로서 국제주의와 공통점들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주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히 처리하며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의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처리하는것이 가 장 합리적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판관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상차이로 하여 국제민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한 국제적합의를 보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고있다.

우선 우리 공화국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립장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데서 공화국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이다.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 제5조에는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이에 따라 대외민사관계에서 제기되는 민사분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공화국의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고있다. 실례로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사건이 공화국민사소송법에서 규제한 재판관할에 속하면 공화국재판소의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있는 것을 들수 있다.

또한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관례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고있다. 그것은 매개 나라는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국제관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를 존중 하고 준수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있으며 대외민사관계에서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를 따르도록 하고있다.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고있다. 그것은 대외민사관계에서 재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 중재관할을 정하는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에서는 재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재판관할을 합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 나라와의 실제적인 련관정도를 따져보고 공화국재판소의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여기서 실제적인 련관정도란 우리 나라의 재판소가 재판관할을 행사하는것을 정당화 할 정도로 당사자나 분쟁대상이 우리 나라와 관련이 있는것을 말한다.

실례로 대외민사관계법 제50조에서는 우리 나라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1. 피고가 우리 나라 령역에 소재지를 가지고있거나 거주하고있을 경우 2. 분쟁의 원인으로 되는 재산손해가 우리 나라 령역에서 발생한 경우 3. 피고의 재산 또는 청구의 대상이 우리 나라 령역에 있을 경우 4. 분쟁의 원인이 우리 나라에 등록한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와 같이 규제하고 당사자들이 재판관할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나라와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국제민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하고있다.

매개 나라는 국제관례에 어긋나게 자기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의 리해관계에만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나라의 재판권의 행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외민사분쟁에서 민사재판권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외국적요소를 가지는 민사사건에 대한 취급처리에서 공화국의 주권과 리익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할것이다.